

#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양승조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019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7. 11. 16.

발의자 : 양승조 · 정춘숙 · 김정우  
신창현 · 인재근 · 안호영  
전혜숙 · 이용주 · 김해영  
이학영 의원(10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정신보건법」이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로 2016년 전부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「정신보건법」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을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 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(안 제46 조제3호).

법률 제 호

**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**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6조제3호 중 “「정신보건법」”을 “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6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렵면허를 받을 수 없다.</p> <p>1. · 2. (생 략)</p> <p>3. 「<u>정신보건법</u>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</p> <p>4. ~ 7. (생 략)</p>	<p>제46조(결격사유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「<u>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</u>」----- -----</p> <p>4. ~ 7. (현행과 같음)</p>